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3 - 12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포함.

(안 제6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안 제16조의2)

다.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안 제16조의3)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안 제16조의4)

마.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misorand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과 성평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
다), 성 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한 성평등에 관한 모
든 법령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시 소속행정기관과”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평등 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② 시장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성평등 정책 추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차별 예방 및 개선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방안
4. 분석평가 및 성 인지 예산제도
5.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6.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남녀평등의식을 제고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조의2(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제16조의3(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6조의4(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제23조의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성인지 통계 및 자료)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통계 및 자료

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성평등 정책의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교육·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2.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13.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는 소관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28조 중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에 성평등 분과위원회 등 여성정책의 세부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여성발전기본법</u> 」 및 그 밖의 여성과 <u>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u> 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여성관계법령</u> ”이라 함은 <u>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 2. “ <u>소속기관</u> ”이라 함은 「 <u>지방자치법</u> 」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u>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처</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u> ”이라----- ----- <u>여성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한 성평등</u> ----- -----. 2. ----- ----- ----- <u>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u> ----- -----

3.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증진, 분석평가, 성평등 도시 기반강화를 --
-----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

제6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② 시장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성평등 정책 추진사항

② (생 략)

제16조(남녀평등의식의 제고)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차별 예방 및 개선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방안

4.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5.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6.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남녀평등의식의 제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
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
가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친
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그 조성기준은 다음 각

<신 설>

<신 설>

호와 같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제16조의3(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 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6조의4(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

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제23조의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신 설>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6(성인지 통계 및 자료)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7(성평등 정책의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교육·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2.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13.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는 소관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15.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8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 위원회에 성평등 분과위원회 등 여성정책의 세부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용도) -----

여 사용한다.

1. ~ 5. (생략)

<신설>

6.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의 지원

-----.

1. ~ 5. (현행과 같음)

6.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
업의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